

의안
번호

384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
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운 영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384호
제 출 자	소형준의원의외 10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한상규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설치 및 임용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정책지원관 배치 등(안 제4조)
- 다. 근무기간, 직무 범위, 직무수행의 제한 (안 제5조~제7조)
- 라. 근무실적평가, 비밀엄수 의무(안 제8조~제9조)
- 마.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, 교육훈련(안 제10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무원법 임용령」,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8. ~ 2024. 11. 12.

4. 검토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¹⁾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²⁾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~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, 정책지원관의 정의, 정책지원관의 최초 임용시 직급을 규정하고 그 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하고, 이 배치과정에서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를 고려하고, 또한 의원이 정책지원관의 임명·배치·근무실적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관련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임.

1)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- 안 제6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 - 안 제7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며,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등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8조에서는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를 할 때 의정 기여도, 업무추진실적, 업무처리능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기준을 통해 지휘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안 제9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신상정보 및 정책수립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규정하고,
 - 안 제10조에서는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정책지원관의 배치나 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용 사실을 시무국에 알려야 함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였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.